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9일, 이정현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현의원)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가.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사전협의 절차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기술육성주체¹⁾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② (생략) <u><신설></u>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국공립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방법·절차 및 제4항-----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27조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통보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보안과제로 분류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된 전략연구과제 중 비공개 대상인 정보나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국한되며, 통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과 요청받은 정보가 해당됨.³⁾

이처럼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은 그 특성상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아 정보보호 및 보안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 측면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보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정보를 보다 한정하여 규정할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 연구성과

다.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취득·유지·활용·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

필요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통보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효과가 발생하게 됨.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적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과는 달리, 특정기술이 아닌 관련 기술 전체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공을 요청받은 모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사전협의를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전협의를 대상 정보가 매우 넓어질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29조4)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인력·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전략기술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경제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활동 등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통보대상 정보 중에서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육성주체가 통보대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거나, 사전협의 대상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해당 국가전략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상의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미승인된 기술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함.

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를 하면서 해당 국가전략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여 협의 대상 기술이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나, 기술육성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국가전략기술” 역시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 시행령 위임을 통해 사전협의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경우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 집행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한 타 법과 조화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국가전략기술은 특정기술이 아닌 관련 기술 전체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국민경제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국가전략기술까지도 사전 협의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활동 등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특정기술이 아닌 관련 기술 전체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국민경제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국가전략기술까지도 사전 협의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활동 등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7조제7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제7항 중 “사전협의의”를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u>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통 보의 대상이 되는 정 보의 범위, 통보의 방 법 및 절차, <u>제3항에</u> <u>따른</u>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 의 지정·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 ----- ----- -----<u>제3항</u> <u>에 따른 사전협의의</u> <u>방법·절차 및 제4항</u> <u>에 따른</u>----- ----- ----- ----- -----.	⑦ ----- ----- ----- ----- -----<u>사전협의의 대</u> <u>상이 되는 정보의 범</u> <u>위, 사전협의의</u>----- ----- ----- ----- -----.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전략 연구과제”를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로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시 사전협의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② (생 략)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 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야 한다.</u>
<u>③ (생 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 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제4항 에----- ----- -----.</u>
<u>⑤ (생 략)</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 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 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 항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⑦ ----- ----- -----사 전협의를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를 방법 ·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 -----</u>

